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1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병도, 유 용, 이광호, 김상훈,
김용연, 권수정, 김제리, 김소영,
이호대, 김소양, 이영실, 오현정,
김동식, 김혜련, 봉양순, 서윤기,
이정인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장년층과 노인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장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대행 관련 규정을 삭제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u>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p>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 -----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운영비용(≒48,000천원)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운영비용

$$= \sum_{i=1}^5 (\text{연간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운영비용

$$= \text{회의 참석수당} + \text{위원회 운영 경비}$$

$$= (150,000\text{원} \times 13\text{명} \times 4\text{회}) + (3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4\text{회})$$

$$= 7,800,000\text{원} + 1,800,000\text{원}$$

$$= 9,600,000\text{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